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상담 권고)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제36조의5제3항 및 제4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수행한 결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전 학교 구성원과 제31조의8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 여부 및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상담을 권고한 학생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상담 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1조의6(치료 권고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31조의5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료 권고
 2. 추가적인 학교 내 상담
 3.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등 학습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 전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 권고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1조의7(정서·행동 긴급지원) ①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실시한 경우. 단, 학생의 생명·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권고를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인 이상 포함한 제31조의8에 따른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긴급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거쳐 긴급 지원한 학생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긴급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은 학교 내 상담 또는 치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또는 치료 등의 형태로 실시하되, 해당 학생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 결과를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긴급지원 받은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의8(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 법 제18조의5에 따른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또는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 학생이 속한 학교의 소속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4.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

제3장제2절에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이하 ‘제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폭력적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가 현존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의 사용 또는 사용에 이르려는 시도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학교의 시설·기자재 또는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손괴행위가 현존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제지는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되, 체벌 또는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지는 학생 행위의 위험 정도에 비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해·타해·훼손 등의 의도를 포기하는 등으로 위험성이 제거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 등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지 과정에서 학생의 자의적 공격·저항 또는 회피행위로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교원은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보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신속히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의5(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 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고성 또는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실 내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 지원

2. 교실 밖 별도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 지원

3.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과 분리된 자리에서 상담 또는 학습 지원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학생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복귀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별도 공간은 학교 내 설치하되 상담 또는 학습이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해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자는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의5(상담 권고)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제36조의5제3항 및 제4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수행한 결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전 학교 구성원과 제31조의8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학교 내 관련 위

<신 설>

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 여부 및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상담을 권고한 학생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상담 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1조의6(치료 권고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 제2항에 따라 제31조의5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료 권고
2. 추가적인 학교 내 상담
3.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등 학습 지원

<신 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 전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 권고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1조의7(정서·행동 긴급지원)

①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실시한 경우.

단, 학생의 생명·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권고를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인 이상 포함한 제31조의8에 따른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긴급지원 여부 및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거쳐 긴급 지원한 학

<신 설>

생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긴급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은 학교 내 상담 또는 치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또는 치료 등의 형태로 실시하되, 해당 학생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장은 긴급지원 결과를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긴급지원 받은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의8(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기준·자격) 법 제18조의5에 따른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상담

<신 설>

권고 또는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 학생이 속한 학교의 소속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4.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

제40조의4(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

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이하 ‘제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폭력적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가 현존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의 사용 또는 사용에 이르려는 시도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학교의 시설·기자재 또는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손괴행위가 현존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제지는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되,

체벌 또는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지는 학생 행위의 위험 정도에 비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해·타해·훼손 등의 의도를 포기하는 등으로 위험성이 제거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 등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지 과정에서 학생의 자의적 공격·저항 또는 회피행위로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교원은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의 보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신속히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의5(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4제1항에 따라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고성 또는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

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실 내 지정된 자리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 지원
2. 교실 밖 별도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 지원
3.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과 분리된 자리에서 상담 또는 학습 지원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학생을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복귀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별도 공

간은 학교 내 설치하되 상담 또는 학습이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의4 제4항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해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연 락 처	(044) 203 - 6209 203 - 6492 203 - 6987